

기획재정부 <small>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</small>	보도참고자료		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기획재정부
	보도일시	2008.3.10(월) 09:00부터	
생 산 일	2008.3.10(월)	생산부서	법인세제과 조세 특례제도과 산업관세과
담당과장	임재현(T: 2150-9150) 장재형(T: 2150-9130) 김종열(T: 2150-9330)	담 당 자	이호섭 사무관(T: 2150-9151) 이인기 사무관(T: 2150-9131) 이경용 사무관(T: 2150-9132) 권기중 사무관(T: 2150-9331)

제목: 2008.3.1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중 조세관련 설명자료

□ 2008.3.10(월) 대통령께 보고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자료 (7%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, 2008년 실천계획) 중 조세지원과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.

[주요내용]

1.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
2.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
3.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
4. R&D에 대한 지원제도
5.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
6. 네트워크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7.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

기획재정부 대변인

1.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[p21]

□ 법인세율 등을 '08년 6월 임시국회에서 금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으며, 2012년 법인세율도 함께 규정하여 시행

구 분	현 행	구 분	개정 1 ('08귀속 ~ '11귀속)	개정 2 ('12귀속 ~)
과표 1억원 초과	25%	과표 2억원 초과	22%	20%
과표 1억원 이하	13%	과표 2억원 이하	11%	10%

※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(10%→8%)도 '08귀속부터 적용

□ (시행) 법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

-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금년 8월 중간
예납부터 적용 가능

2.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(10→8%) [p21]

□ 최저한세제도의 내용

- 법인세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* 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

* 감면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
□ 개선내용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

- 법인세 낮은 세율 인하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하향 조정

	현 행		개 정
법인세 낮은 세율	13%		11%('08귀속~'11귀속) 10%('12귀속~)
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	1억원 이하	→	2억원 이하
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	10%		8%

3.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(p11)

* 할당관세 : 물가안정, 수급조절 등을 위해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%p까지 가감할 수 있는 제도

□ 도입취지 : 곡물, 농축산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, 생필품의 가격안정과 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원

□ 대상품목 및 할당관세율 인하폭 : 관계부처와 협의·결정

○ 대상품목은 밀 등 가공용 곡물과 농축산업 원자재 중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인상된 품목

○ 세율 인하폭은 대상품목의 가격인상폭, 국내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
□ 적용시기 : 4월 중순경 시행

○ 시행과 동시에 관세율이 인하 적용됨

4. R&D에 대한 지원제도 (p8)

① R&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인상

- 기업이 R&D를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, 직업훈련용 시설,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
 - 공제율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 : 7 → 10%
-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② R&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범위 확대

- 기업이 연구원 인건비, 기술연구개발 위탁비용, 시약류 구입비 등 R&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
- 공제세액
 - ① 중소기업 = Max{(ㄱ), (ㄴ)}
 - (ㄱ) 당해연도 지출액×15%
 - (ㄴ) (당해연도 지출액 - 직전4년평균 지출액) ×50%
 - ② 대기업 = Max{(ㄱ), (ㄴ)}
 - (ㄱ) 당해연도 지출액×(3%+매출액 대비 R&D비율%×0.5, 6%한도)
 - (ㄴ) (당해연도 지출액 - 직전4년평균 지출액) × 40%
- 공제대상 추가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)
 -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,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 등
-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5.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(p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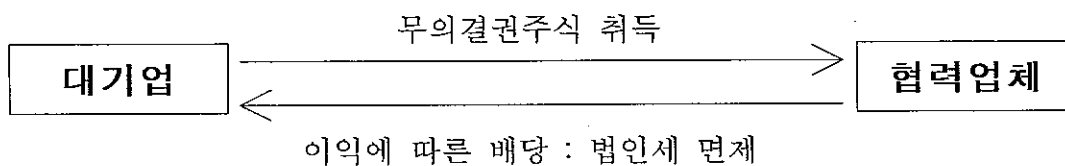
□ 도입취지 :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고, 동반성장 달성을 지원

□ 제도개선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

○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

- * 출자비율 30%~ : 배당소득의 30% 법인세 면제
- 출자비율 30~99% : 배당소득의 50% 법인세 면제
- 출자비율 100% : 배당소득의 100% 법인세 면제

⇒ 대기업이 '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배당소득 전액을 법인세 면제



- * 상생협력 : 대기업과 중소기업간, 중소기업간,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술·인력·자금·구매·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동의 활동
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)

** 무의결권주식 :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식

□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출자하여 받는 배당금 분부터 적용

6. 네트워크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(p12)

□ 도입취지 :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대한 현금성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금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

* 현금성결제: 환어음, 판매대금추심의뢰서, 기업구매전용카드,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, 구매론, 네트워크론

□ 제도개선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

○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

	현행	개정
30일 이내 현금성 결제	구매금액의 0.4%	0.5%
· 대기업-중소기업 네트워크 론	0.3%	0.4%
30~60일 현금성 결제	0.15%	0.1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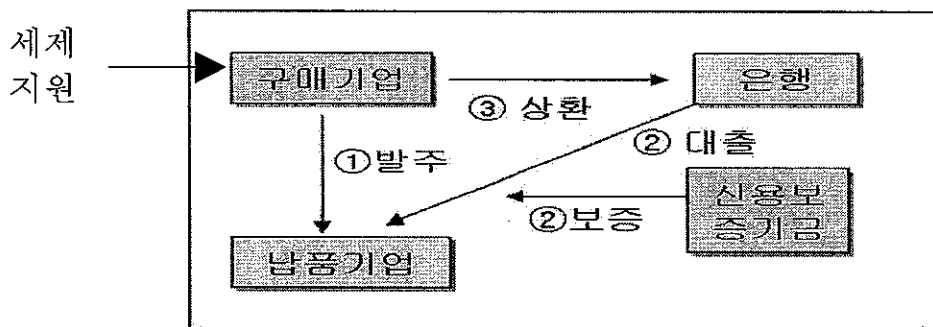
□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

※ 네트워크론 제도

○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고,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

* 납품완료 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된 시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발주시점에서 생산자금을 선지원받는다라는 점이 특징

<Network Loan제도 운영방식>



7.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(p27)

□ 도입취지 :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 (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
* 금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 적용 대상이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 전환해야 하는 의무 부과

□ 대상 기업 : 중소기업

□ 대상 업종 : 모든 업종(다만, 일부 호화향락업종 제외)

□ 공제내용

○ 중소기업이 '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'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

□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정규직 전환근로자부터 적용하되 '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